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350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0. 20.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단133301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4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고, 다음 제2항에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은 제외].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에서 제5행의 '피담보채무 18,000,000원'을 '피담보채무 18,000,000원(채권최고액은 23,400,000원이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83,436,200원'을 '103,436,200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 D : 8,481,284원'을 '㉠ D : 8,481,284원(이 사건 피보전채권)'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 E : 15,824,473원'을 '㉠ E : 15,824,473원(이 사건 피보전채권)'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가액배상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7. 11. 6.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12. 15.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I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회복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17. 11. 6. I에게 71,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역시 71,000,000원으로 추인할 수 있고(피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3,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7,600,000원(= 71,000,000원 - 23,400,000원)이 된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7. 21. 현재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은 49,211,495원이므로, 원고는 그 중 적은 금액인 4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4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B공사에 대한 약 100,000,000원 상당의 수용보상금 채권, AC에 대한 6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및 약 650,000,000원 상당의 보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B의 수용보상금 채권의 경우,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B공사는 2019. 7. 4.에서야 AD 재개발사업구역 내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보상대상자 확정 및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안내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수용보상에서 제외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의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다투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에게 확정적으로 수용보상금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A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경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은 B이 현재까지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650,000,000원 상당의 보석의 경우, 을나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650,000,000원 상당의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보석의 가액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B은 위 보석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B과 2008. 7. 24. 이혼을 한 이후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없어 B의 경제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B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서구 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고양시 토지 및 지상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B이 피고에게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나 제1, 2, 3(을나 제19호증과 같다), 6, 1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고양시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B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이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에 앞서 B의 다른 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²⁾,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선의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이 사건과 소송당사자나 취소의 대상 및 그 취소 대상 계약의 체결 시기 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정우혁, 판사 정현서

목록

1. 속초시 Z 전 1,385㎡
2. 속초시 AA 전 162㎡, 갈.

1) 원고는 청구취지 확장에 의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2) B의 다른 채권자인 V이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1939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7155 사건, B의 다른 채권자인 W이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7162 사건